

FIP-2014-0009 (통권 제208호, 2014. 11)

# 문화접대비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

ISSUE  
PAPER



## Contents

### <요약>

I. 검토배경 .....	1
II. 문화접대비 제도 .....	2
1.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 .....	2
2. 문화접대비 제도의 기대 효과 .....	4
3. 문화접대비 해외 사례 .....	5
III. 문화접대비 지출과 제도 활용 현황 .....	6
1. 접대비 지출 현황 .....	6
2.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.....	8
3.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실태 조사 .....	9
IV. 시사점 .....	12
<별첨> 문화접대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.....	13
<참고문헌> .....	14

-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본회 금융조세팀 박예지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.  
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TEL : 02-3771-0151    FAX : 02-6234-5385    E-mail : pyj706@fki.or.kr



● ● ● 요약 ● ● ●

- 기업의 접대문화는 여전히 유흥 중심이며, 문화접대 비중은 미미
  - 국내 법인들의 접대비 지출은 2009년 7.4조 원에서 2013년 9조 원으로 약 20.4% 증가한 데 반해, 문화접대비 지출은 동 기간 4.7% 증가
  - 2013년 법인카드 접대비 지출액 중 립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 지출한 금액은 1.2조 원을 초과하였으나, 문화접대비 지출은 45억 원에 불과
- 접대문화 개선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,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
  - 기업 설문조사 결과,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기업은 10개 중 2개에 불과
  - 문화접대비 제도 자체에 모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
  - 민간 부문뿐 아니라,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또한 문화접대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
- 문화접대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식변화 필요
  - 기업과 국민의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
    - 문화접대 우수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문화접대 방식을 발굴
    - 문화접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,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
  -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유인을 강화
    - 문화접대비 지출 인정 항목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접대가 활성화되도록 함
    - 일몰 연장뿐 아니라, 문화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를 현행 ‘접대비 한도액의 10%’보다 더 확대하여 ‘쓴 만큼 혜택을 주는’ 유인책 필요



## I. 검토배경

- **향응 중심의 접대문화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지만,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**
  - 우리나라의 향응 중심의 접대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옴
  - 정부에서는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접대비 실명제\*,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 향응 위주의 접대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, 접대문화는 개선되지 않음
    - \* 접대비 실명제: 향락 위주의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하였으나, 실효성이 없고 기업의 영업활동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
  - 국세청에 따르면, 매년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이 1조 원 이상
    - \*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전인 2007년의 법인카드 호화유흥업소 지출액은 1.6조 원, 2013년은 1.2조 원(국세청, 「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현황」, 2014.8)
- **이에 정부는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과 “문화로 모시기 운동” 등 접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했으나, 문화접대비 지출규모는 제자리**
  - 2007년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계정을 신설하고, 문화접대비 지출에 대해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**문화접대비 손금 산입 특례**를 신설
  - 문화접대비 제도와 더불어 문화관광부에서는 “문화로 모시기 운동”\*을 추진하고,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기업 접대를 위한 VIP 관람석인 ‘메세나27’ 대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문화접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
    - \* 문화로 모시기 운동: 문화접대비 정착을 위해 정부, 지자체, 언론,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캠페인(2007)
  -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은 미미하였고, 지출금액 역시 거의 변화가 없음
- **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접대비 지출 실태와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함**

## Ⅱ. 문화접대비 제도

### 1.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

- 접대문화 개선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‘문화접대비 제도’ 도입
  - 2006년 12월 ‘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’의 일환으로 문화접대비 제도를 신설, 2007.9.1. 부터 시행
  -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도입
-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와 별도로 일정 범위까지 추가로 비용 인정
  - 국내에 지출한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지출에 대해 별도로 추가 손금 산입을 인정해주는 **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\*** 신설
    - \* 문화접대비 계정 신설
    - \*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 중 총 접대비의 3%를 초과(2012년부터 1%, 2014년부터 폐지)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, 접대비 한도액의 10%까지 추가 손금 산입
    - ※ 접대비 한도액: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적용률(매출액에 따라 0.2~0.03%)을 한 금액에 기본한도(일반기업 1,200만 원, 중소기업 1,800만 원)를 더하여 산출
  - 문화접대비란 2004년 1월 도입된 ‘접대비실명제’에 사용된 ‘문화접대’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, 공연·전시 등의 입장권과 음반·간행물 등의 구입에 지출된 금액

#### <문화접대비의 범위>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공연, 전시, 박물관 입장권 구입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
-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」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
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이용권의 구입 <손금산입특례확대 2010.>
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구입(입장권 가격 중 식사·주류 가격과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절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) <손금산입특례확대 2010.>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



- 도입 후 두 차례의 일몰 연장과 손비인정 범위 확대를 거쳤으며, 최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7년까지 일몰 연장 추진 중
  - 2007년 9월부터 시행 후 2008년 일몰 예정이었으나, 세법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일몰을 연장하였으며, 다시 2014년까지 일몰 연장
  - 도입 당시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3%를 초과한 경우에만 손비를 인정하였으나, 3%를 2012년부터 1%로 축소하였고 2014년부터는 이 요건을 폐지하여 손비인정범위 확대
  - 최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문화접대비 제도 일몰을 2017년까지 연장

## 2. 문화접대비 제도의 기대효과

□ [경제적 효과] 법인세 감면 효과와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발생 예상

- 도입 당시, 기업이 문화접대비 한도(기존 접대비의 10%)를 모두 사용할 경우, **157억 원의 법인세 감면 예상**(문화관광부, 2007)\*

\*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2007.2.13.) 비용추계서에 의함

-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**1,620억~5,400억 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** 발생 예상

\* 문화관광부가 한미회계법인 연구보고서(2005.10.)를 재구성하여 산출

### <문화접대비 제도 개선 효과 분석>

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율	제도 개선 전 문화접대비	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증가 효과	제도 개선 후 총 문화접대비
1%(Case 1)	500억 원 (5조 원×0.01)	540억 원 (500억 원×1.08 <sup>1)</sup> )	1,040억 원 (500억 원+540억 원)
3%(Case 2)	1,500억 원 (5조 원×0.03)	1,620억 원 (1,500억 원×1.08)	3,120억 원 (1,500억 원+1,620억 원)
5%(Case 3)	2,500억 원 (5조 원×0.05)	2,700억 원 (2,500억 원×1.08)	5,200억 원 (2,500억 원+2,700억 원)
10%(Case 4)	5,000억 원 (5조 원×0.1)	5,400억 원 (5,000억 원×1.08)	1조 400억 원 (5,000억 원+5,400억 원)

\* 자료: 문화관광부 「문화접대비 Q&A」(2007)

1) 한미회계법인 조사 결과, 문화접대비 제도 개선 시, 문화접대비 지출을 현재보다 평균 108% 증가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신규 수요 창출 효과 재구성

※ 문화예술 지원 공공재원 규모(2007): 3,344억 원(국고 2,308억 원 + 기금 1,036억 원)

□ [문화·사회적 측면 효과] 접대문화 개선, 기업이미지 제고, 문화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

-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가 생산적 투자로 전환되어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기여
- 기업의 문화마케팅 영역 확대로 기업 이미지 제고, 문화예술계의 창작 기회 확대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

□ 그러나 문화접대비 제도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, 도입 시 예상했던 경제·사회적 효과를 얻지 못함

### 3. 해외의 접대비 제도

#### □ 우리나라와 해외의 ‘접대비’ 개념이 상이

- 한국, 일본에서는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출한 오락, 접대, 금품제공의 비용을 의미하나, 미국·영국·독일에서는 지출 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목적이 오락 연회, 여흥 등인 경우 모두 포함\*
- \* 서구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접대문화가 덜 발달되어,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출이나 내부적인 지출이냐의 구분에 대한 실익이 없음
-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접대비에 별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,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해 400만 엔의 정액한도 규정
- 우리나라의 경우, 다른 나라에 비해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인정 범위가 넓음 (문화관광부, 2007)

<각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>

국가	접대비 개념	손금인정 여부	손금산입 요건	한도
미국	거래 상대방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접대, 오락의 제공 및 선물의 증정	Entertainment Expenses 50%, gift 1인당 25달러 이하	사업과 관련된 지출	한도 없음
일본	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접대, 위안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	중소기업에 한해 지출액의 90% 손금인정	별도의 규정 없음	연간 400만 엔
영국	-	손금불산입	-	-
독일	사업상의 이유에 의해 지출하는 접대 관련 비용	지출액의 70% 손금인정	적절한 지출, 장부상 증빙	
뉴질랜드	사업상의 목적으로 유흥, 오락을 위해 지출한 비용	접대비 성격에 따라 100% 또는 50%	사업상의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	

\* 문화관광부 「문화접대비 Q&A」(2007), 세법연구센터 「각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」(2006)

- 문화접대비는 기업의 소비성 지출을 문화서비스 산업으로 유도하는 우리나라의 매우 독창적인 제도

### Ⅲ. 문화접대비 지출과 제도 활용 현황

#### 1. 접대비 지출 현황

- 2013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9조 원이며, 5년 전에 비해 20.4% 증가
  -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, 국내 법인의 접대비 신고금액은 2009년 7.4조 원에서 2013년 9조 원으로 늘어 약 20.4%가 증가
  - 특히,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보다 높아 접대비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큼
    - \* 2012년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의 비중은 0.053%인 반면, 중소기업은 0.373%(도종환 의원 「2014 국정감사 자료집」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‘2014년 문화 접대비 사용현황 설문조사 결과’(중소기업 250개사, 대기업 50개사 대상), 2014.10.)

#### <최근 5년간 접대비 지출 현황>

(단위: 개, 억 원)

구 분	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 (잠정)
신고 법인 수		419,420	440,023	460,614	482,574	517,805
접대비 총액	합 계	<b>74,790</b>	<b>76,658</b>	<b>83,535</b>	<b>87,701</b>	<b>90,068</b>
	중소기업	44,465	45,050	48,318	51,820	52,416
	일반법인	30,325	31,608	35,217	35,881	37,652

\* 자료: 국세청

-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보면, 접대비 성격의 지출 중 룸살롱에서 사용한 금액이 가장 많음
  -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카드 사용현황 분석 결과, 접대비 성격의 지출 중 룸살롱에서 사용한 금액이 7,467억 원으로 가장 많고, 이어 단란주점(2,110억 원), 극장식 식당(1,339억 원) 순

## &lt;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현황&gt;

(단위: 억 원)

구 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 (잠정)
<b>법인카드 사용액</b>	<b>413,090</b>	<b>532,377</b>	<b>690,491</b>	<b>950,221</b>	<b>919,857</b>
룸살롱	9,140	9,963	9,237	8,023	7,467
극장식 식당	1,773	2,102	1,624	1,341	1,339
나이트클럽	629	564	507	429	416
요 정	273	270	438	869	1,006
단란주점	2,247	2,436	2,331	2,107	2,110
<b>유형업소 지출 합계</b>	<b>14,062</b>	<b>15,335</b>	<b>14,137</b>	<b>12,769</b>	<b>12,338</b>

\* 자료: 국세청

## 2.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

□ 문화접대비 지출은 2013년 45억 원으로, 2009년 이후 제자리 수준

-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해온 반면, 문화접대비 지출은 2009년 43억 원에서 2013년 45억 원으로 2억 원 증가에 불과
-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접대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, 문화접대비 지출은 매년 감소

### <최근 5년간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>

(단위: 개, 억 원)

구 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 (잠정)
합 계	43	44	49	45	45
중소기업	23	13	14	11	11
일반법인	20	31	35	34	34

\* 자료: 국세청

□ 2013년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당시 예측한 금액의 약 100분의 1에 불과

-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당시, 문화체육관광부는 5조 원에 이르는 접대비의 10%인 5,000억 원을 신규 문화접대비 지출 수요로 보았으나, 실제 지출은 2013년 45억 원
- 제도 도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산 방식으로 계산하면, 2013년 접대비 9조 원 중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해 최대 9,000억 원의 문화예술 수요가 창출
  - 이는 2013년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룸살롱과 요정에 사용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5년 문화재정 1년 예산 5.9조 원의 15%, 전년 대비 늘어난 문화재정 예산 5,642억 원의 약 2배 가까운 금액

□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, 기업의 접대형태는 여전히 향응 위주

- 문화접대비 지출은 전체 접대비의 0.05%에 불과하여,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
- 호화유흥업소에 대한 지출은 2013년 1.2조 원을 웃도는 반면, 문화접대비는 45억 원 수준으로 기업 접대 형태는 여전히 향응 위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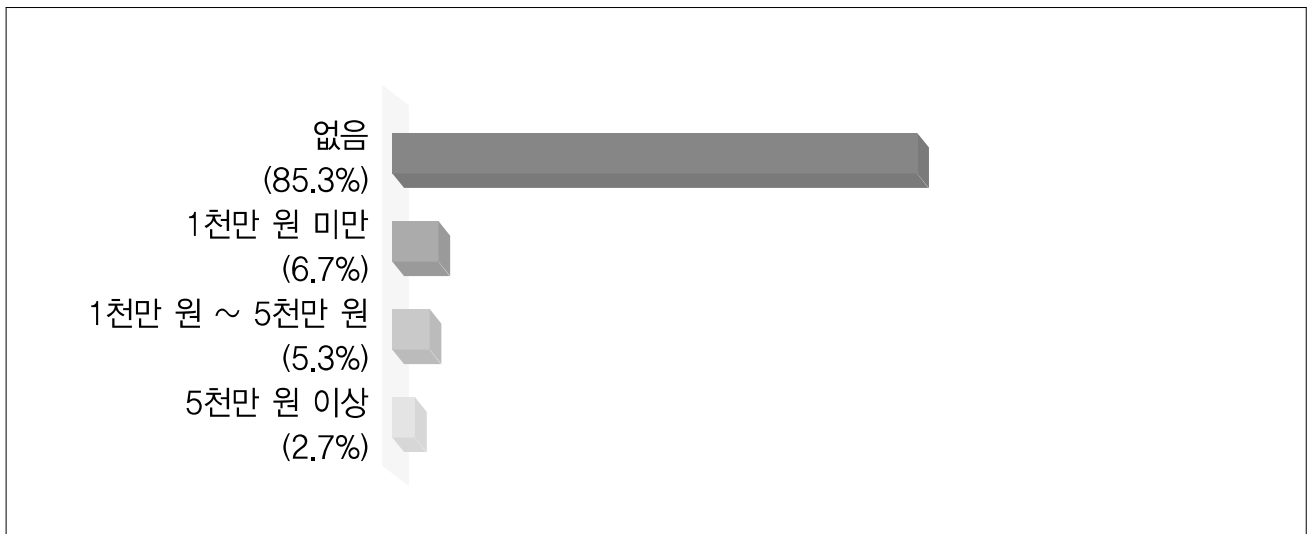
### 3. 문화접대비 제도의 활용 실태 조사

#### 1)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현황

□ 본회 조사 결과,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기업은 20%에도 미치지 못함

- 9월 실시한 「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」에서 응답기업(대기업 76개사) 중 85.3%가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다고 응답

<2013년 문화접대비 지출 신고 금액>



\* 자료: 전경련, 「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」, 2014.

-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, 지출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%를 넘지 못해 69.1%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
  - 문화접대비 지출이 ‘총 접대비의 1%를 초과’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문턱으로 작용하여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할 수 없었음
  - 이 문턱 요건은 2014년 들어 폐지되어, 향후 기업이 문화접대비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 99.0%에 이르는 기업이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한 손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

\* 도종환 의원 「2014 국정감사 자료집」, 2014.10.

□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도 문화접대비 제도 외면

-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기준 접대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,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\*의 문화접대비 지출은 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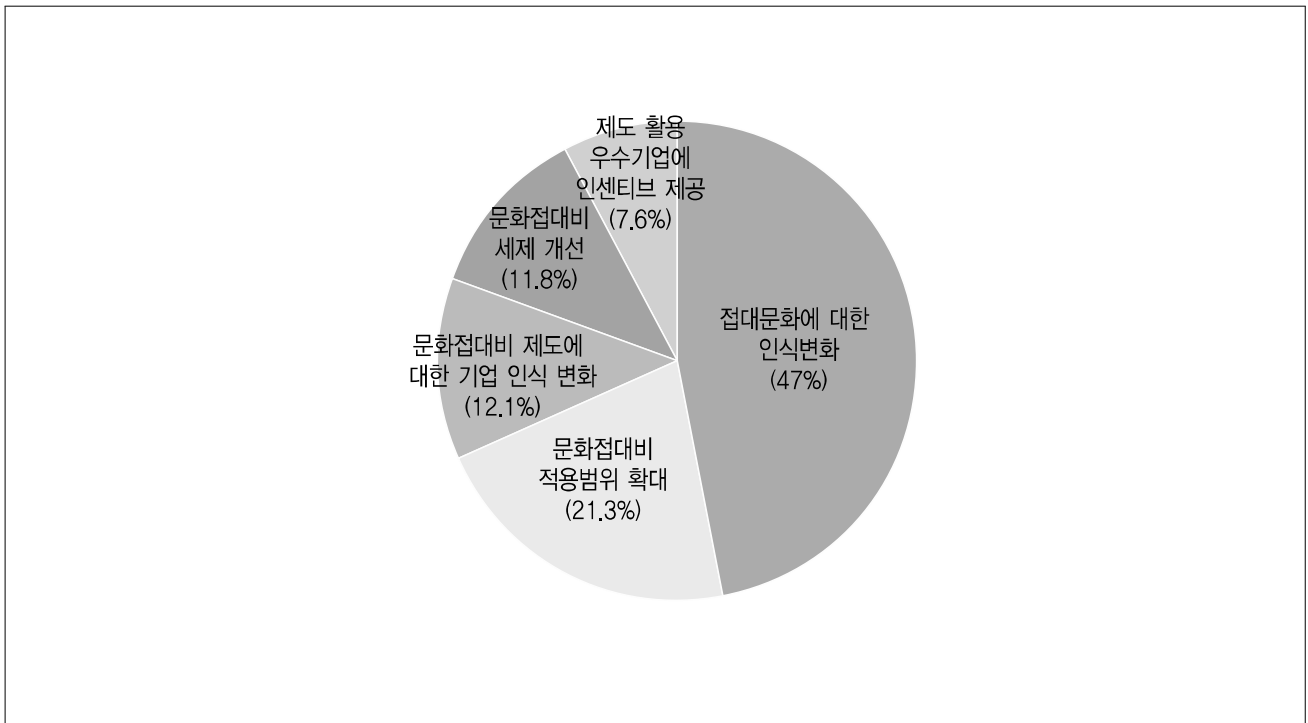
\* 조사 대상 공공기관(괄호 안은 접대비 지출 금액): 그랜드코리아레저(291억 원), 체육진흥공단(24.8억 원), 국제방송교류재단(11억 원), 예술의전당(8.6억 원), 한국관광공사(3.3억 원), 한국언론진흥재단(3억 원), 한국체육산업개발(2.8억 원), 명동정동극장(2.2억 원), 영화진흥위원회(8,700만 원)

## 2) 문화접대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

### □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저조

- 본회 「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」에서 응답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7.2%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‘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’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
-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서도,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‘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’라고 답한 기업이 52%에 달함
- 실제 기업과의 인터뷰에서도 문화접대보다는 향응접대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여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

<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>



\* 자료: 전경련, 「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」, 2014



## □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유인 부족

-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은 공연·스포츠·박물관 관람 티켓이나 음반·도서를 ‘구입’하는 형태에 한정
  - 티켓이나 상품 구입이 아니라, 자체 문화행사 개최 시, 대관비 등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
- 지출 금액에 비해 혜택이 적고, 실무상 문화접대비를 일반 접대비와 구분해 처리하기 힘들어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음
  - 「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」 결과, 문화접대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 ‘문화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타 계정으로 처리’ 했다는 응답이 19.1%
    - \* 1위: ‘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이 1%를 초과하지 않아서’(69.1%)
  -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결과,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‘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서’라는 응답이 61.1%
  -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하더라도 지출 규모 자체가 작고 그에 비해 혜택이 적어, 접대비와 번거롭게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고 판촉비 등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등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유인이 떨어짐

## □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

-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「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」에 따르면, 문화접대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‘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’란 응답이 56%를 차지
  - \* ‘잘 모른다’는 답변비율 중소기업 71%, 대기업 56%
-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 중 ‘접대비 지출액의 1% 초과 요건’이 폐지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본회 조사 결과, 응답 기업의 26.7%가 모른다고 답변
- 문화접대비 제도가 실시된 지 7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, 상당수 기업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음

## IV. 시사점

### □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

- 공연관람이나 문화행사 개최 등 새로운 방식의 문화접대 사례를 발굴하고, 문화 접대 우수 사례집 배포와 같이 홍보를 강화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
  - 본회 설문조사 결과, 응답기업의 59.3%가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응답
  - 문화접대 사례에 대한 정보가 없어, 많은 기업들이 관심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
- 문화접대로 인해 발생된 긍정적 효과(기업 이미지 개선, 새로운 문화수요 창출)를 조사·홍보
- ‘접대’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
  -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당시, 접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‘문화 접대’ 용어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

### □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유인을 강화

- 문화접대비 추가손비 인정 한도를 현행 접대비 한도액의 10%보다 확대하고, 일몰을 폐지하여 기업들이 문화접대에 쓴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확대
  - 문화접대비 지출 비중이 미미하고,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적은 만큼, 문화접대가 정착되기까지 ‘쓴 만큼 혜택을 주는’ 지원 필요
  -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, 제도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여, 문화 접대비 제도의 일몰 기한 연장만으로는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역부족
- 공연티켓, 문화상품 구입에 한정된 문화접대비 지출 인정 항목을 확대하여, 다양한 형태의 문화접대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
  - 티켓이나 문화상품을 구입해 선물하는 형태의 문화접대뿐만 아니라, 자체 기획한 문화행사에 대한 지출 등 문화접대비 인정 항목을 다양화하여 활용 유인을 높임

## 〈별첨〉 문화접대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

- 조사기간: 2014. 9.18(목) ~ 9.24(수), 5일간
- 응답기업: 76개 대기업
- 조사방법: 기업 담당자 자기기술과 조사원의 질의기술 병행

1. 귀 법인의 2013년 접대비 지출 신고 금액은 얼마입니까?  
 ① 1억 미만(8.1%) ② 1억 이상~10억 미만(44.6%) ③ 10억 이상~50억 미만(37.8%) ④ 50억 이상(9.5%)
2. 귀 법인의 2013년 문화접대비 지출 신고 금액은 얼마입니까?  
 ① 없음(85.3%) ② 1천만 원 미만(6.7%) ③ 1천만 원 이상~5천만 원 이하(5.3%) ④ 5천만 원 이상(2.7%)
3. 귀 법인이 문화접대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 
 ①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이 1%를 초과하지 않아서(69.1%)  
 ② 전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자체가 초과하지 않아서(5.9%)  
 ③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(1.5%)  
 ④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타 계정으로 처리(일부분만 처리한 경우도 포함)(19.1%)  
 ⑤ 기타(4.4%)
- 3-1. 타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 
 ① 세제혜택이 적어서(6.7%) ② 문화접대비 경비를 적게 사용해서(60.0%)  
 ③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함(13.3%) ④ 세무사가 처리해주지 않아서(0%)  
 ⑤ 기타(20.0%)
4. “문화접대비” 제도와 관련 2014년 1월 1일자로 “접대비 지출액 초과한도 1%” 요건이 폐지되어 문화접대비 인정금액이 확대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?  
 ① 알고 있다(62.6%) ② 모른다(26.7%) ③ 관심 없다(10.7%)

※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%를 초과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%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, '접대비 지출액 1% 초과 요건' 폐지(2014.1.1. 시행)

5. 현재 문화접대비를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% 까지 추가손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접대비 한도액을 10~20%로 확대한다면 문화접대비를 어느 정도 확대하시겠습니까?  
 ① 10% 미만(26.7%) ② 10% 이상~20% 미만(16.0%) ③ 20% 이상(6.7%) ④ 확대하지 않음(50.6%)
6. 문화접대비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?  
 (1순위 2점, 2순위 1점으로 계산, 216점 만점)  
 ①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(술, 골프 접대 → 공연, 티켓 등 문화접대)(47.2%)  
 ②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기업(CEO, 세무담당자)의 인식변화(12.1%)  
 ③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(추가 손비 인정 10% 한도 조정 혹은 폐지, 일몰기간 폐지 등)(11.8%)  
 ④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(문화접대 항목 및 대상자) 확대(21.3%)  
 ⑤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(7.6%)

## 참고문헌

- 국세청, 「최근 5년간 접대비 지출액 현황」, 2014. 8.  
국회의원 도종환, 「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」, 2014. 10.  
국회의원 도종환, 「기업의 문화접대비 비중 전체 접대비의 1%도 안 돼」 보도자료, 2014. 9.  
문화관광부, 「문화로 모시기 운동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, 2007. 8.  
문화관광부, 「문화접대비 Q&A」, 2007.  
문화관광부, 「문화로 모시는 아름다운 사회」 보도자료, 2007. 8.  
한미회계법인, 「기업접대비 지출현황 분석과 문화접대비 지출 활성화 방안 연구」, 2005. 10.